



중앙전파관리소가 하는 일

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방송통신, 함께하는 중앙전파관리소

1 디지털 전파·방송통신 재난 위기 대응

-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
- 방송통신설비 안전점검 및 기술기준 적합조사
- 전파감시, 전파교란 대응
- 전파혼신처리 및 중요통신망 보호
- 전파차단장치 제조·수입 등 인가 및 사용신고
- 국내·외 위성전파감시 및 국내 위성망 보호 활동
- 불법무선국 조사·단속
- 무선국 기술기준 및 허가사항 위반 조사·단속

2 전파·방송통신 이용자 권익보호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단속
- 불법감청설비 조사·단속 및 탐지업 등록·관리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관리·감독
- 무선국 전자파 관리
- TV방송 수신장애 조사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위반행위 사실조사
-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표준음량 기준 준수 조사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실태검사

3 편리한 전파·방송통신 행정서비스

- 무선국 허가·검사, 방송국 검사
- 공중케이블 점검
- 방송통신사업 등록·관리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
- 유료방송사업자 허가 조건 이행 점검
-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 전기통신설비 제공 이행실태 관리
- 전파환경 수탁 측정 및 누설전자파 조사
- 정보통신방송분야 비영리법인 허가·감독

4 국제협력 및 전파교육

-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국제 표준화 활동
-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 어린이 전파교실

중앙전파관리소

1947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파를 관리하고,
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입니다.
국민이 편리하게 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터넷 전자민원 emsit.go.kr

민원상담 080-700-0074 / 02-3400-2000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중앙전파관리소	(0583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02-3400-2000
위성전파감시센터	(17413)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00	031-644-5900
서울전파관리소 - 서울북부사무소	(08249)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 (1160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	02-2680-1700 031-849-5800
부산전파관리소	(46703)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051-974-5100
광주전파관리소	(58214)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00
강릉전파관리소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980
대전전파관리소 - 당진사무소	(35283)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31754)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042-520-4100 041-360-2800
대구전파관리소	(42043)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053-749-2800
전주전파관리소	(55316)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제주전파관리소	(63037)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064-740-2800
청주전파관리소	(2856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길 30	043-261-5811
울산전파관리소	(45013)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810

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방송통신, 함께하는 중앙전파관리소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로 인터넷 등을 통한 포털, 온라인쇼핑몰, 게임, SNS, 인터넷 금융, OTT 등이 해당됩니다.

■ 신고없이 사업을 경영한 자는 시정명령, 역무제공 중지,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1억원 이하) 대상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및 제96조(벌칙)

신고대상

☎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 합병 등으로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 쇼핑몰 창업 시 행정절차

사업자등록신고
(관할세무서)

통신판매업 신고
(관할 시·구청)

부가통신사업
신고
(관할 지역 전파관리소)

신고면제

☎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

■ 다만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본금이 1억원인 사업자는 신고면제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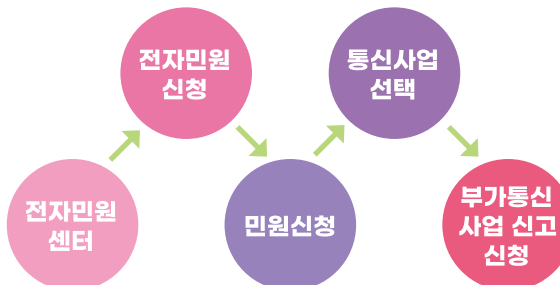
■ 개인의 경우 자본금 확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해당 사업 명목으로 은행 잔고증명서, 부동산 감정액, 사무실 임대비용, 사무실집기비용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온라인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통신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다수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구체적인 신고여부 결정은 신고자가 제출한 통신망 구성도, 제공역무 등을 분석하여 판단합니다.

신고방법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우편 / 팩스

지역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또는 이용자보호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관할 지역	소재지	연 락 처
서울전파관리소	서울 인천 경기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	02-2680-1757
부산전파관리소	부산 경남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051-974-5115
광주전파관리소	전남 광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3	061-330-6811
강릉전파관리소	강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814
대전전파관리소	충남 대전 세종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042-520-4136
대구전파관리소	경북 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053-749-2817
전주전파관리소	전북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105
제주전파관리소	제주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들길 385	064-740-2819
청주전파관리소	충북 청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55
울산전파관리소	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885

☎ 구비서류

■ 부가통신사업신고서

■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내역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